

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시장 승인된 문경관광진흥공단
인사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2020. 6. 29.

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

문경관광진흥공단 규정 제219호

문경관광진흥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

문경관광진흥공단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1(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) ① 이사장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시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47조의1(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) ①이사장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.</u>

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에 관
하여 필요한 사항은 휴직자 복무
관리 지침으로 정한다.